

## 운영규정 개요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 관 명 | 동.서.남.북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        | 설치일자  | 2020.05.                    |
| 급여종류  | 방문요양                       | 정 원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시 설 장 | 이영순                        | 전화/팩스 | 043-237-0075 / 043-237-3999 |
| 주 소   |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갈월팔봉길 115(팔봉리)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■제공하는 급여 종류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방문요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(세면, 목욕,식사도움, 체위변경 등), 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(취사, 청소, 세탁 등)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용자 모집<br>방법 등에 관한<br>사항                     | 1.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을 받은 자(1~5등급)로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(이하'대상자'라 함)나 가족, 주변권유, 직원, 온라인, 공단홈페이지 등으로 홍보하여 모집한다.<br>2.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 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용계약에<br>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계약기간 :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(기간 변경 가능)<br>2.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: 월 한도액 및 이용료는 대상자 등급에 따라 다르며, 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.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br>3.신원 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와 의무 : 신원 인수인의 권리는 서비스 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확인 및 시정조치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, 신원 인수인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.<br>4.계약의 해제 : 대상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반영하며,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 |
| 이용료 등<br>비용에 대한<br>변경 방법 및<br>절차 등에 관한<br>사항 |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<br>1.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 된 경우<br>2.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된 경우<br>3.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비스의 내용과<br>그 비용의<br>부담에 관한<br>사항            |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(세면, 목욕,식사도움, 체위변경 등), 인지활동지원, 인지관리지원, 정서지원,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(취사, 청소, 세탁 등)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관은 매월 서비스 제공후 다음 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해 본인 부담금 납부를 요청하고 대상자 혹은 보호자는 그 비용을 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 납부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서비스 제공자의<br>배상책임, 면책<br>범위에 관한<br>사항         |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 서비스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체적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는 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전문인의 과실인 경우 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.단 대상자 본인의 부주의 및 서비스 제공 시간 외 사고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충처리절차에<br>관한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모든 직원은 서비스 제공(근무) 중 문제점 및 애로사항, 성희롱·성폭력 사례 및 기타 고충에 대하여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, 이를 서면으로 작성·제출함으로써 기관에 고충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.<br>고충 처리 담당자(사회복지사)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통한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. 기관장은 불만 및 고충 사항을 접수한 직원에게 회의 결과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통보한다. 고충처리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 및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